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자원외교 대상국,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정부의 인권 침해 연루 실태에 대한 고찰

사회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1. 우즈벡의 인권 상황

우즈베헌인권연합 활동가 Adelaida Kim

2.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대한 대응 사례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3. 대우즈벡 투자 및 자원외교와 인권의 문제

좋은기업센터 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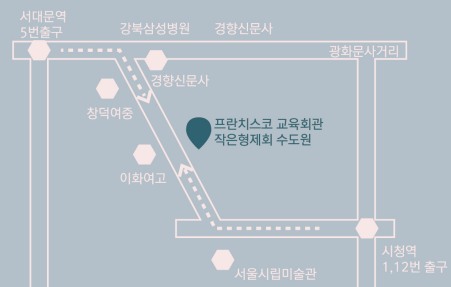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5. 3. 13. 금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향)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토론회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즈벡 면화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대 방직공장을 운영하고,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낡은 우즈벡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여 지폐를 생산하고, 정부는 섬유기업 대표들을 동반하여 우즈벡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더욱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거버넌스가 취약하여 인권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복합화학발전소를 건설 하는 등 에너지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지학순 정의 평화상 수상을 하신 우즈벡 인권활동가 연합(Alliance of Uzbekistan) 소속 Adelaida Kim과 여러 활동가들을 모시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한국기업과 정부의 인권침해연루 실태에 대한 고찰을 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즈벡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연루가 근절되는 도정에 위치한 것이길 바랍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Program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KTNC Watch - March 13, 2015

시간	프로그램	
04:10~05:40 (90분)	환영 및 발표회 배경 설명	사회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차장
	우즈벡 인권상황 관련 영상	우즈벡인권활동가 연합 Elena Urlaeva
	발표1) 우즈벡의 인권 상황	우즈벡인권활동가 연합 Adelaida Kim
	발표2)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대한 대응 사례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발표3) 대우즈벡 투자 및 자원외교와 인권의 문제	좋은기업센터 유정
05:40~05:55 (15분)	토론자 및 발제자와 청중간 질의 응답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대한 대응 사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1.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김태희가 밭을 메고, 한가인이 소를 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가끔씩 보도되는 자원외교의 성과로 우즈벡의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열린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심의에서 우즈벡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이들이 매 가을 마다 목화 수확에 동원 되어 학교도 못 가고 강제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은 이렇게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목화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우즈벡이 다른 제도는 완벽한데 면화 농장에서의 아동강제노동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일까? 수확기마다 아이들이 학교 대신 목화 농장으로 동원되어 면화 수확에 동원되는 그림이 나타나기까지, 마치 맞춰지지 않은 퍼즐의 조각들과 같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우즈벡 난민신청자와의 만남

우즈벡에 대한 우리(적어도 우리 사무실)의 이해의 지경을 직접적으로 넓혀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즈벡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사건이다. 사무실에서 난민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 난민인정불허 통지를 받자마자 3시간 만에 강제송환을 당했다는 것이다.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서는 14일 내로 이의제기가 가능했지만 그런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난민신청자는 이미 강제송환을 당할 뻔 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화성보호소에 구금이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제송환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중에 이 사람을 태워간 우즈벡 항공에 알아본 결과 우즈벡에서 비밀경찰 2명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 사람은 그 뒤로 우즈벡에서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이다.¹ 사실 난민신청을 대리할 때부터 좀 놀랐었는데, 무슬림인 신청자가 난민신청사유가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즈벡은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이 탄압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었었는데, 국가정황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즈벡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 종교의 자유 탄압

¹ 공익법센터 어필, 3월 21일 강제송환된 우즈벡 난민신청자 실종되다, 2012.3.29., <<http://www.apil.or.kr/1067>>

우즈벡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22년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다.² 22년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우즈벡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즈벡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국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무슬림들이나 등록되지 않은 종교 기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법 체포, 고문, 구금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평범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2011년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라는 죄목으로 구금이 된 자들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동료 수감자들 앞에 벌거벗겨 지고, 맞고, 성추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 및 기타 소수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불법 종교 교사 등의 행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마약 소지 등, 다른 범죄를 덮어 씌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 폭력 및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³

라. 안디잔 학살

안디잔 학살은 언뜻 1980년도 광주를 생각나게 만든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⁵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즈벡의 동부도시 안디잔은 소액금융과 구호활동을 통해 이슬람 조직이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우즈벡 정부는 무능한 정부보다 이슬람 세력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였는지, 이슬람 조직들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였다. 2004년 6월, 우즈벡 당국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라는 이유로 안디잔 지역 주민 23명을 구금했는데, 이에 주민들은 지역 사업가일 뿐이라고 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 법원의 근처에서 4개월 넘게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었다. 2005년 5월 13일, 무장세력들이 이들이 구금된 곳을 23명의 피구금자들을 습격하여 석방시켰고, 불만이 극도에 다다른 지역 주민들은 도심의 광장에 모여 당국의 부패와 반인권적인 관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평화롭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벡 당국은 이들을 향해 탱크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²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7년, 헌법에 명시된 3기연임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18년의 임기 후, 7년 임기의 대권에 당선되었다. 우즈벡 카리모프 '독재는 계속된다', 중앙일보, 2007.12.2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989882&cloc=>>

³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2: Uzbekistan, <<http://www.hrw.org/world-report-2012/world-report-2012-uzbekistan>>

⁴ 시인 정한용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두 사건을 기리며 “광주에서 안디잔까지” 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http://www.poemcafe.com/zboard/zboard.php?id=scrap&page=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1050&PHPSESSID=2b6066fd7b4ce037efd2d33a65b53cbd>에서 읽을 수 있다.

⁵ 이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는 약 2주 뒤, 한겨레에 보도된 것과(안디잔의 5월, 한겨레, 2005.5.30.<<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013.html>>), 사건으로부터 4년 뒤,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거의 유일하다. (구정은, [어제의 오늘]2005년 우즈벡 ‘안디잔 학살’, 경향신문, 2009.5.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05315&code=100100>)

가했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 당했다. 우즈벡 당국은 사망자가 187 명이라고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국제 언론에 따르면 1,500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우즈벡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조사 요구를 꾸준히 무시하고 있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사건을 목격한 후, 다른 나라로 피해간 난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으며,⁷ 안디잔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는 자들에게 모욕과 실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으로 보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마. 인권 활동 및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

우즈이렇게 열악한 우즈벡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즈벡 정부의 인권활동가와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해외 인권 활동가 및 언론들의 접근을 막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 년 동안 고문 특별보고관 등을 포함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번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더러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을 보도한 언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쫓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Human Rights Watch 가 강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문을 닫고 활동가가 추방이 되었으며, 2012 년 3 월에는 영국의 BBC 와 러시아의 Novaya Gazeta 의 기자들(Natalia Antelava, Viktoriya Ivleva)이 추방을 당했다.

현재 수많은 우즈베키스탄 인권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구금되어 있다. 1999 년에 구금된 Erk 의 리포터인 Yusuf Ruzimuradov 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전 세계에서 최장기간 구금된 언론인이다. Erk 의 편집장이었던 Muhammad Bekjanov 역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13 년 동안 구금이 된 후 2012 년 1 월 풀려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구금 시설에서의 규율 위반이라는 이유로 5 년 형을 더 선고 받았다. Human Rights Society of Uzbekistan 라는 단체에서 농부들과 장애인들의 사회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Alisher Karamatov 라는 활동가는 6 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2012 년 4 월에야 풀려났다.⁸

바. 고문

우즈벡에서 고문이 체계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및 보편적정례검토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2011 년 12 월에 발표된 Human Rights Watch 의 “목격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보고서는 이러한 실상을 잘 드러내 주는데, 고문의 방법으로 끓는 물을 붓거나, 손목과 발목에 줄을

⁶ 위 경향신문 보도 및 BBC 기사 (How the Andijan killings unfolded, BBC News, 17 May 2005 <<http://news.bbc.co.uk/2/hi/4550845.stm>>) 참조.

⁷ Human Rights Watch 의 보고에 의하면 우즈벡 정부의 귀국해도 안전하다는 보장 하에 우즈벡으로 귀국을 한 난민이 2010 년 4 월 30 일, 반헌법적 활동 및 불법월경으로 10 년 2 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⁸ Human Rights Watch, Uzbekistan: Activist Free but Crackdown Widening, 13 April 2012, <<http://www.hrw.org/news/2012/04/13/uzbekistan-activist-free-crackdown-widening>> (공익법센터 어필, [우즈벡]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 2012.4.14., <<http://www.apil.or.kr/1080>>에서 재인용).

묶어 매달아 놓거나,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도록 한다거나, 가스 마스크로 질식시키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된다고 한다.

2. 아동강제노동의 실태우즈벡 면화산업에서의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

가. 면화 - 우즈벡의 하얀 황금(white gold)

아이러니하게도 우즈벡은 1991년 소련연방에서 독립을 했지만, 그 때 도입된 면화의 할당량 부과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6번째로 면화를 많이 생산하였고 5번째로 많은 면화를 수출하였다. 면화 수출은 2010-2011 국가수출량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화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면화는 정부가 통제하는 농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농민들은 이 농장에서 목화를 심고, 추수한 목화를 자유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 대신, 각 지방정부의 지역의 조면기(면화에서 솜과 씨를 분리하는 기계)로 운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에서는 농부들이 재배한 면화, 원면(raw cotton)을 국가가 소유한 조면협회(state-owned cotton ginning association)가 정당한 원가의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가격으로 모두 사들이고, 가공 처리된 린트(processed lint, 면화 씨를 둘러싼 부분)의 75%는 정부가 소유한 3대 무역회사에 의해 수출되어 곧바로 정부에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면화를 팔게 되는 경우에는 밀수출로 적발되어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나. 국가주도하의 강제노동

우즈벡 정부는 면화 산업 부문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농부들에게는 면화를 재배하도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면화를 수확하도록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봄에는 면화밭 제초에 아동과 성인들이 동원되고 있다. 학생들은 퇴학의 위협 속에서 교육체제를 통하여 목화밭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농부들,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 그리고 사회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은 국가 목화 생산 계획을 위하여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직업, 임금 및 사회 복지 지원을 볼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십여년 간의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2012년, 우즈벡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였고, 2013년 국제노동기구의 모니터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3년, 정부는 계속해서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을 동원하였다. 16, 17세 아동들은 목화 밭에 여전히 강제로 동원되었고, 더 많은 수의 성인들이 동원이 되었다. 게다가 교사들을 목화 밭에 동원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들이 성인들대신 싼 임금으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니터링을 허용은 하였지만, 국제노동기구의 업무범위는 아동노동으로 제한이 되었고, 정부는 모니터링을 방해하였다. 정부는

모니터링 현장에 정부 관리들을 계속해서 배치하였고, 검열을 피해 사람 들을 이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다.

2014 년에도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의 조직적 사용을 계속하였다. 당국은 농부들이 생산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하였고, 시민들이 위협 하에 수확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였다. 정부는 그 전 해보다 더 많은 수의 성인들로 하여금 목화를 수확하는데에 동원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 중 50%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학교와 병원이 텅비게 되었다. 공무원들이 전국 적으로 아동들을 동원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3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국가 목화 생산 계획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아동들을 수확에 동원하도록 지시한 것이 보고 되었다.

3.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

가.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은 1996 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섬유산업에 진출하여,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 부하라 2 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0 년에는 한국조폐공사와 합작회사로 총 투자액 중 35%를 투자하여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였다. 대우텍스타일은 우즈벡 국내에서 가공되는 면화 중 20%를 가공하여 연간 24 만추 이상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즈벡 내에서 최대 생산량이며, 생산품 전량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나.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코고지사를 인수하여 2010 년 9 월 13 일에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였다. (조폐공사 65%, 대우인터내셔널 35% 지분). 이는 국내의 낙후 설비 대체 및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제품,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GKD 는 당초 운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여 실패한 자원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을 받았으나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대응 (연대기 순으로)

가. 질의서 발송 (2012. 9.)

코튼캠페인과 함께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각 사에 우즈벡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① 대우인터네셔널/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파종과 재배가 강제노동을 거쳐서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 명시된, 면화와 관련한 책임 있는 대외구매 네트워크 서약에 서명을 한다.
- ②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제노동을 통한 면화 생산 시스템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면화 구매를 중지하고 현지에서의 모든 면화관련 작업을 중단한다.
- ③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우인터네셔널/조폐공사의 공급망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위협과 침해상황에 대한 독립된 제 3 자의 평가 및 공적인 보고를 승인한다.

이에 대하여 각 사에서는 우즈벡 당국에 확인한 결과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며 코튼캠페인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조폐공사 국정감사 (2012. 10.)

2012 년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의원과 박원석의원은 GKD 가 아동노동 문제에 연루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조폐공사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부위원장에게 조폐공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GKD 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간담회 개최 (2012. 12. 13.)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민주연대는 공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박원석의원과 함께 '아동노동에 눈감은 MB 의 자원외교 -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코튼캠페인 사무국장과 ILRF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캠페인 디렉터가 한국을 방문하여 우즈벡 현지 조사 상황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라. 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 기자회견 (2013. 6. 12.)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박원석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우즈벡 아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지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즈벡 아동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조폐공사가 이러한 아동노동으로 수확된 면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으며 몇몇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마. 현지실태조사 (2013. 9. 24. ~ 2013. 10. 5.)

공익법센터 어필과 좋은기업센터에서는 2013 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하였다. 수확기 목화밭의 모니터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확기에 학생들이 동원되어 텅 빈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인터뷰 및 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⁹, 이후 목화밭에서 경찰에게 억류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보고서는 2014 년도 미국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인용이 되었다.¹⁰

바. 조폐공사 국정감사 (2013. 10.)

2012 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2013 년도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석의원은 조폐공사의 내부 감사 체제에서 아동노동 문제에 연루되는 문제에 대하여 시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목화 수확기에 우즈베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노동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박원석의원은 추수기간에 닫은 학교들 및 제초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의 사장은 이에 대하여 아동노동의 존재를 부인하는 우즈베크 정부의 공식성명을 존중하여야 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였다.¹¹

사.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항의 서명 수집 및 전달 (2014. 7.)

공익법센터 어필은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캠페인 단체인 Walk Free 와 함께 전세계 190 여 개국에서 22 만 8425 명이 서명한 항의 서한 - "대우는 우즈베크 강제노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국제노동기구가 강제노동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즈베크에서 목화를 구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을 대우 본사에 전달하였다. " 항의문서 전달 전에는 대우 본사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항의 문서 전달 이후에는 대우의 모기업인 포스코 본사에도 찾아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아. OECD NCP 이의제기 (2014. 12.)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코튼캠페인에서는 OECD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대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NCP 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회사인 포스코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에도 각각 모회사와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며, 노르웨이 연기금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노르웨이 NCP 에도 이의제기를 동시에 하였다.¹²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⁹ <http://www.apil.or.kr/1413> 참고

¹⁰ <http://www.apil.or.kr/1639> 참고

¹¹ <http://www.apil.or.kr/1414> 참고

¹² <http://www.apil.or.kr/1664> 참고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는 우즈벡 목화 산업에서 국가 주도하의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목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Chapter IV. 3 and Chapter II A.12 위반);

공급망에서 종 합적인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ligence)를 실시한다 (Chapter IV. 5 and Chapter II. A. 10 위반);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Chapter II. A. 2, Chapter IV. 1, Chapter V.1.c., and Chapter V.1.d 위반);

인권 침해를 야기 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 한다 (Chapter IV. 2 and Chapter II A.11 위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문제시한다는 것을 공언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벡 정부가 목화 산업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구매 및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제 3 자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발행을 허용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즈벡 정부가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보상비 및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한 개선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러한 비용이 독립적인 “인권기금” 등으로 지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서 대우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통한 기업의 운영과 연관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포스코는 1) 대우인터내셔널이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2) 대우가 개선 비용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3) 투자자에게 이러한 개선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야한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대우인터내셔널과의 금융관계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운영에 연관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방지하거나 완화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진정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경감조치를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1) 이들의 발언권을 사용할 방법; 2) 이들의 발언권을 증가시킬 방법; 3) 투자 계속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에 대한 공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유엔 메커니즘 이용

가. 우즈벡 UPR NGO 레포트 연명 및 로비 (2013. 4.)

2013년 우즈벡 정부의 UPR 심의 시에도 Cotton Campaign 과 함께 우즈벡 정부의 강제노동 사용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는 레포트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심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부에 연락을 하여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한국대표부가 우즈벡 정부 심의시에 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나. 한국정부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보고서 제출 (2014. 12.)

2014년 말에는 2015년에 열릴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에 대비하여 자유권 규약의 역외적용 의무에 대하여 강조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사용하며 강제노동에 연루가 되는 것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자유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한국정부, 한국기업의 역할을 찾아

지난 2014년 6월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¹³

특히, 섬유부문 협력사업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영원무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키잉글산노트 간에 2,000만 달러 투자 규모의 합작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와 대우 텍스타일 부하라 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하여 1,2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¹⁴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면화산업에서의 국가주도의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면화를 계속해서 구매함으로써 사업관계를 통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강제노동의 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즈벡 목화농장에서 강제노동이라는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한 조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잘못 놓여져 있는 조각 조각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국 사람, 한국 기업,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¹³ 공감정책특집,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유라시아 외교’의 내용과 성과, <http://koreablog.korea.kr/377>

¹⁴국제섬유신문, 영원무역 2,000만불 투자 등 3개 합작 사업 추진 합의, 2014.06.23.,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27>

대우즈벡 투자 및 자원외교와 인권의 문제

2015. 3. 13
좋은기업센터 유 정

1. 우즈벡 자원보유 및 산업 현황

- 1> 원유-가스
- 2> 광물

2. 한국기업의 자원개발 진출현황

- 1> 한국기업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 2> 주요 프로젝트
 - ① 나망간·추스트 원유 개발 (탐사)
 - ②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원유 개발 (탐사)
 - ③ 우준쿠이 가스 개발 (탐사)
 - ④ 수르길 가스 개발 / 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생산)
- 3> 인권탄압국 독재자 카리모프와 MB,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Excellent Chemistry)'

3. 우즈벡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인권정책

- 1> 인권정책 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보고내용
- 2>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기준, EITI와 VPs
- 3>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훈
 - ① 포스코, 인도 오랏사 일관제철소 개발 프로젝트
 - ②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4. 인권친화적 자원외교를 위해

1. 우즈벡 자원보유 및 산업 현황

1> 원유-가스

○ 원유의 경우, BP(2012년 기준)는 우즈벡의 원유확인 매장량을 81백만톤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우즈벡 정부 자료는 자국의 추정 매장량은 8.17억톤, 확인 매장량을 5.3억톤으로 가채연수를 26년으로 평가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경우, 우즈벡의 정부 자료에 의하면 우즈벡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5.9조㎥, 확인 매장량은 3.4조㎥이며, BP(2012년 기준)는 우즈벡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1.123조㎥ 발표하고 있음. 확인된 약 120개의 가스전 가운데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의 가스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우즈벡 경제에서 유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2%, 총 산업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우즈벡 정부는 유가스 생산량 확대 및 현지 가공을 증가를 위해 기존의 러시아 중심의 천연가스 수출로를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새로운 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에너지 분야 FDI 유치 촉진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탐사 기술 낙후성을 만회하기 위하여 유가스전 개발시 외국기업들과 PSA(Product Sharing Agreement)를 추진함.
- 국영회사인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 Uzbekneftgaz¹⁾)가 원유 및 가스의 개발·생산·수송 등 전과정을 독점함.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원유 (백만톤)	7.21	7.23	7.16	6.61	5.44	5.37	4.92	4.80	4.5	3.7	3.58	3.16
천연가스 (BCM)	57.4	58.4	58.0	59.8	59.7	62.7	65.3	67.6	61.4	60.1	63.0	62.9

[출처] State Statistics Committee

- 우즈벡의 원유 정제능력은 연 11.2백만톤으로, 페르가나, 부하라, 알티야릭 등 3개가 있으나, 노후화 등으로 가동율이 55~60% 선이며, 일일정제량은 약 8.6만 배럴에 그쳐 국내 휘발유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유시설현대화를 추진중.
- 우즈벡 에너지 생산의 85%에 달하는 천연가스의 75~8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음.
- 우즈벡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14~15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스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직 등 인근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음.

천연 가스 수출 현황

단위: BCM

수출 대상	'05	'06	'07	'08	'09	'10	'11	'12
러시아	8.2	9.3	9.6	14.2	15.4	15.5	13.5	8.7
카자흐	1.5	1.6	2.8	3.5	?	?	?	?
키르기즈	1.5/2	1.47/2	0.85	0.728	0.25	0.25	0.2	?
타 직	1.5/2	1.47/2	0.65	0.512	0.25	0.25	0.18	0.13
중 국								4-5
총 계	11.2	11.3	13.9	15.44	15.93	16	13.88	13.4
수출액(억불)	4.8	7.4	14.5	22.2	34.9	35.2	45	50.3

- 무바렉 및 슈르탄공장이 가동중이며, 가스화학산업은 우즈벡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2011~2015년 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가스처리시설을 재건하고 신규 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르길가스화학공장 : 한국 컨소시엄(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STX에너지)이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와 공동(50:50)으로 아랄해 인근에 수르길 가스전 개발/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40억불 규모)하여 생산되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38만톤, PP(폴리프로필렌) 8만톤의 제품은 중국, 동유럽, 인근 CIS국가에 판매할 계획임. 한국 기업들은 설계·시공, 프로젝트 운영, 제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수르길 가스화학 개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주도함.

2> 광물

- 우즈벡에는 주요 비철금속자원인 금,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은, 셀레늄 등 약 118종의 광물자원이 존재함.
- 금의 추정 매장량은 1,700톤으로 세계 10위이며, 중요한 수출품으로서 총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노천 금광인 무룬타우(Muruntau)는 연간 약 50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음.

1) 국영석유가스공사(UNG, Uzbekneftgaz) 1993.1.14 설립된 우즈벡내 유가스 산업 전분야를 담당하는 독점 국영기업(정부 지분 100%). 우즈벡네프찌가스 산하에 190개의 관련 기업이 있으며 8만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

- 40개의 우라늄 광산이 발견됐으며, 세계 생산량의 4%를 생산(7위)하여 전량 수출되고 있음. 일본과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우즈베크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품목이 '우라늄'이 차지함.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보유 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1,900	860,900	0.23	-
금	톤	1,700	52,000	3.3	10
우라늄	톤	96,000	5,327,200	1.8	12
은	톤	10,000	540,000	1.85	10
구리	천톤	12,000	680,000	1.77	13
몰리브덴	천톤	60	11,000	0.55	12
텅스텐	톤	32,000	320,000	1.3	7
아연	백만톤	4.72	250	1.89	11
납	백만톤	1.895	89	2.13	8

[출처] mineral.ru, IAEA, USGS, State Geology Committee of Uzbekistan, CIS Statistics Committee

- 국가지질자원위원회는 지질탐사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우라늄·금·구리 등을 제외한 모든 광물자원의 지질탐사를 담당함.

- 우즈베크 광업 부문은 AGMK(Almalyk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와 NGMK(Navoi Mining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2개 국영 기업이 주요 광물 생산을 독점하고 있음. AGMK는 우즈베크에서 유일하게 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은의 90%, 금 20%를 생산하고 있고, NGMK는 우즈베크의 우라늄 수출을 독점 관리하며, 금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금 생산기업임.

광물 생산 현황

단위: 천톤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금	79.3	78.5	85	85	90	90	91	90
은	83	83	83	83	85	59	60	-
몰리브덴	575	600	600	500	500	500	500	550
우라늄	2,300	2,270	2,300	2,338	2,429	2,400	3,000	2,400
구리	115,000	115,000	89,655	71,000	80,000	90,000	91,500	95,600
텅스텐	300	300	-	-	-	-	46.7	131
아연	29,000	46,000	71,800	70,445	40,000	40,000	50,000	61,100
석탄(백만톤)	3.07	2.72	2.8	3.32	3.654	3.63	3.845	3.853

[출처] mineral.ru, USGS, World Nuclear Association, infogeo.ru,

2. 한국기업의 자원개발 진출현황

1> 한국기업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No	개발광구	광종	참여시기	사업단계	공사지분 (한국) %	투자비(억원)
1	자파드노	금	2006	철수	20 (50)	5.8
2	잔타우르	우라늄	2006	탐사	50	알 수 없음
3	아랄해 (Aral Sea)	가스	2006	종료	10.2 (20)	160
4	나망간·추스트 (Namangan-Chust)	원유	2008	철수	50 (100)	487
5	서페르가나·취나바드 (West Fergana&Chinabad)	원유	2010	철수예정	65 (100)	107
6	우준쿠이 (Uzunkui)	가스	2008	탐사	25 (50)	65
7	35&36 ²⁾	가스	2008	탐사	(100) 대우인터	알 수 없음
8	수르길(Surgil)	가스	2008	개발	22.5 (50)	3,100



○ 우즈베크에 자원외교를 위해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들 중 '나망간·추스트 개발'건과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개발'건은 MB의 실패한 자원외교 사례로 꼽히고 있고, 또한 '우준쿠이 개발'건은 '2008년 탐사를 위한 계약을 맺은지 무려 17개월동안 실제조사에 착수조차 못했고', '매장량이 포텐셜이 낮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2009년 국감에서 지적됨.

○ '수르길 가스 및 가스화학단지 개발'건은 우즈베크와 한국의 대통령이 모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가스생산부터 개발까지 한국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우즈베크 북서부 우스트리히트 지역의 Koskudyk35 광구, Ashibulak36 광구

2> 주요 프로젝트

① 나망간·추스트 원유 개발 (탐사)

- 광구명 : 우즈벡 Namangan-Chust
- 운영권자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경부) 신고일 : 2008년 12월
- 한국측 지분 : 100% -- 한국석유공사 지분 : 50%
-- 국내참여기업 지분 : 50% (SK가스, POSCO, 삼천리, SK E&S)
- 투자규모 : 487억원
- 추진경과 : 2008년 11월 탐사계약 체결, 2009년 5월부터 탐사작업 진행
2014년 7월 철수 추진중. (10월 국정감사, 추미애 의원실 배포자료)
- 이슈 :
 - * 2008년 5월,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총리는 첫 출장지가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였고, 우즈벡에서 가장 대표적인 MB 자원외교 사례로 꼽힘.
 - * 2014년 10월, 석유공사가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망간·추스트 원유 탐사 프로젝트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함.

②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원유 개발 (탐사)

- 광구명 : 우즈벡 West Fergana&Chinabad
- 운영권자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경부) 신고일 : 2010년 6월
- 한국측 지분 : 100% -- 한국석유공사 지분 : 65%
-- 국내참여기업 : 35% (POSCO, 삼천리)
- 투자규모 : 107억원
- 추진경과 : 2010년 2월 탐사계약 체결, 2011년 8월부터 탐사작업 진행, 2014년 신규 물리탐사 자료 해석 작업
2014년 7월 철수 예정 (10월 국정감사, 추미애 의원실 배포자료)
2014년 11월 탐사결과 평가 중, 사업 지속 추진 여부 검토 중 (해명 자료³⁾)
- 이슈 :
 - * 2014년 10월, 석유공사가 추미애 의원실과 전순옥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원유 탐사 프로젝트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탐사결과를 평가중이며,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함. 또한, 약 470억~1800억의 추가지출이 계획됐음을 발표해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효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음.

③ 우준쿠이 가스 개발 (탐사)

- 광구명 : 우즈벡 Uzunkui (BLOCK XIII)
- 한국측 지분 : 50% -- 한국가스공사 지분 : 25%
-- 국내참여기업 : 25% (롯데케미칼 15%, LG상사 5%, STX 5%)
- 투자규모 : 65억원
- 추진경과 : 2008년 5월 공동조사를 위한 합의서 체결
2011년 탐사 1단계 완료
2012년 3월 탐사 2단계 시작. (사업기간 2013년 8월까지 연장)
- 이슈 :
 - *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우즈벡 우준쿠이 광구 공동조사합의서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우준쿠이 광구 매장량 포텐셜이 낮아 여러 가지 위험요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해명 자료 ('14. 11. 20)

④ 수르길 가스 개발 / 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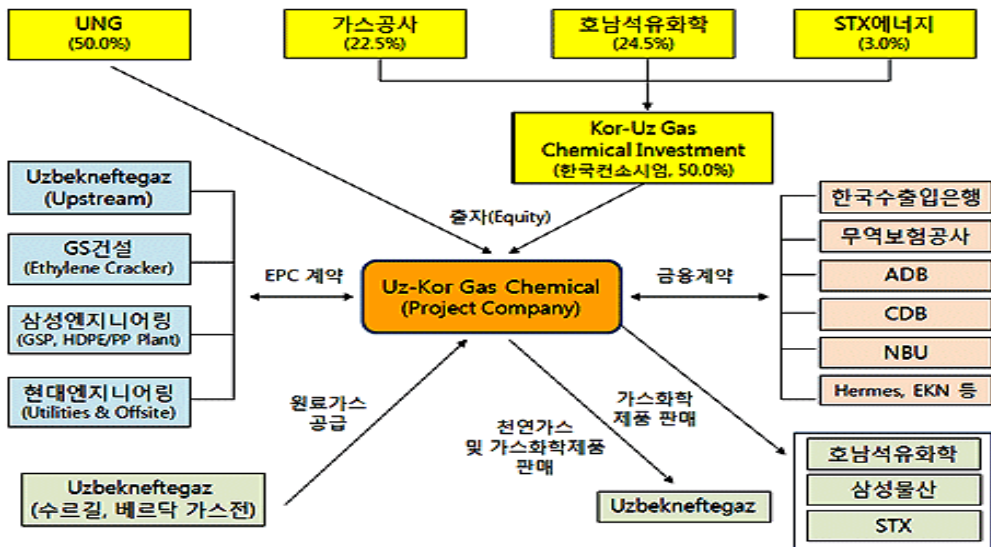
- 광구명 : 우즈벡 수르길(Surgil)
- 운영권자 : 우즈 코리아 가스 케미컬(Uz-Kor Gas Chemical)-합작법인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경부) 신고일 : 2008년 4월
- 한국측 지분 : 50% -- 한국가스공사 지분 : 22.5%
 - 국내참여기업 지분 : 27.5% (롯데케미칼 24.5%, STX에너지3%)
- 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참여 기업 :
 - 설계·시공 :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 프로젝트 운영 :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 제품 구매 : 삼성물산, 호남석유화학, (주)STX
- 투자규모 : 총사업비가 약 4조 4,000억원(40억 달러) 중 2014년 6월 누적 투자금 3,100억4(310백달러)
- 추진경과 : 2008년 2월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 체결
2014년 6월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중, 2016년 생산 예정⁵⁾
- 이슈 :
 - * 중앙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이며,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실상 첫 번째 육성가스전이며, 우즈벡 건국 이래 최대 규모(40억 달러)이자 최초의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개발됨
 - * 2012년 국감에서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수출입은행이 수르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질타당함. 우즈벡의 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 즉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도 2013년 3월 직접 대출 7억 달러, 채무 보충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을 승인했기 때문임.
 - * 2014년 9월 현재, 가스화학단지 조성 현장은 한국직원 약 7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여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방글라데시 등 해외에서 수급하고 있음.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안건: 우즈베크 수르길 사업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하겠냐고 하셔서 FID(최종투자자결정) 할 때까지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성은 어때냐’ 그래서 ‘사업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성은 지금 잘 모르는데 감은 좋지요.” (2010년 6월29일)

* 2014년 11월 13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년 6월29일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당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감이 좋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함.⁶⁾



4)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14. 11. 20)
 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14. 11. 20)
 6) 한겨레 보도, [단독] “사업성 모르지만 감이 좋아”...견제 없었던 ‘MB 자원개발’, 2014년 11월 14일

3> 인권탄압국 독재자 카리모프와 MB,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Excellent Chemistry)'

○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은 20년이 넘게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로 그의 가족들이 정부 요직과 국영기업들을 장악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음. 또한 카리모프 정권은 광범위한 고문과 납치, 살인, 부정선거, 경찰 폭력, 금융 부패, 종교 탄압, 언론 자유 억압,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으로 지탄받고 있고, 보안부대는 2002년 카리모프 정적 두 사람을 끓는 물속에 넣어 죽였으며 2005년 비무장 시위대 수백 명을 살해한 Andijan 대학살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우즈벡의 악명 높은 고문과 집단학살, 국가 주도적 아동 착취 등을 의식해 서구 기업들은 우즈벡 진출을 꺼리고 있으며, 미국은 우즈벡을 북한, 이란, 미얀마 등과 더불어 세계 8대 인권탄압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1992년 한국과 우즈벡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양국 관계가 돈독한 적은 없었음.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에 총 7회 방문했는데, 이 중 제 7번의 방한이 MB정부때 이뤄짐. 또한 2009년 이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우즈벡을 찾았을 때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든 일정에 동행해 외교가와 취재진이 '24시간 밀착외교' '스토킹 외교'라고까지 지적함.

한국-우즈벡 고위 인사 교류 실적

2008. 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08. 3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 5	한승수 총리 방우
2008. 6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 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우
2008. 9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시 정상회담
2008. 10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방우
2008. 10	박진 외통위 위원장 방우
2009. 5	이명박 대통령 방우
2010. 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11. 8	이명박 대통령 방우
2012. 8	박재완 기획경제부 장관 방우
2012. 9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12. 11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 방우
2012. 12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방우
2013. 5	양성태 한국 수석재판관 방우
2013. 7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우
2013.11	루스탐 아지모프 제1 부총리 방한
2014. 6	박근혜 대통령 방우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10년 2월 25일자 주한미대 사관의 전문은 "이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유엔이 꾸준히 비판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별도논평을 본국에 전달함. 2010년 2월 11일 서울을 방문한 카리모프를 환대하여 "이전부터 친밀했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졌다." 주한 우즈벡 대사 펜은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가 '탁월한 화학적 결합(excellent chemistry)'을 이루었다"고 스티븐스 미국대사에게 자랑했다고 함.

○ 수르길 가스전 개발은 양국 정상에 가장 열성적으로 벌인 사업 중 하나로, 우즈벡 아랄 해 남쪽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0억 달러(약 4조3600억원) 규모임.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수출입은행은 2012년 국감에서 우즈벡의 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 즉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도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직접 대출 7억 달러, 채무보증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을 승인한 내용에 대해 지적받음.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중앙아·독립국가연합(CIS)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유라시아넷(<http://www.eurasianet.org>)'은 2012년 6월5일 "우즈벡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우즈벡을 끌어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우려를 표명함.

[사진설명] 2012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국빈 만찬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3. 우즈벡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인권정책

1> 인권정책 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보고서) 보고내용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등 우즈벡에서 자원개발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인 보고기준 GRI를 지표로 삼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보고서)를 발행해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보고내용 대부분 본사 및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지사 및 지분참여 출자회사가 인권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이슈는 무엇인지,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한국석유공사 2013 CSR보고서에는 'GRI G3.1 부가지표 Oil & Gas Sector Supplement'에 따른 보고내용이 정리됨. 그러나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고 있어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현장의 인권정책의 추진현황을 알 수 없음.

지표	GRI 지표내용	보고 Page	충족 여부
Oil and Gas Sector Supplement			
OG1	추경되는 매장량과 생산량 및 종류	32~33,35	●
OG2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된 총 금액	83	●
OG3	자원에 의해 생산된 재생가능 에너지의 총량	79	●
OG4	생물다양성 위험이 평가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는 중요 사이트의 수와 비율	83	●
OG5	생산수의 배출량과 폐기량	공사는 생산수의 농도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배출량 및 폐기량 관리를 검토할 예정	○
OG6	플래어링 벤팅된 탄화수소의 양	공사는 2014년 데이터 취합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관리 및 보고할 예정	N/A
OG7	시추니의 양과 처리, 처분 전략	국내 사업장의 12,13년에는 시추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외사업장 시추시 발생하는 시추니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N/A
OG8	연료의 변전, 납, 황 함유량	공사는 경제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N/A
OG9	원주민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 원주민을 위한 특정 포용전략의 준비	주변사업장에 원주민 거주지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N/A
OG10	지역사회와 원주민과의 중요 분쟁사항들의 수와 설명	주변사업장에 원주민 거주지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N/A
OG11	폐지된 사이트의 수와 폐지되고 있는 사이트의 수	향후 발생가능	●
OG12	비자발적인 이주와 재정착이 발생한 경우와 재정착 가구의 수, 그들의 생계에 끼친 영향	사업장은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N/A
OG13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공경 안전행사의 수	공경안전 행사수 집계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는 중	N/A
OG14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구입되고 생산된 바이오 연료의 양	바이오 연료의 생산 및 구입을 하지 않음	●

[출처] 한국석유공사 2013 CSR보고서 중 GRI G3.1 부가지표(Oil & Gas Sector Supplement) 94p

2>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기준, EITI와 VPs

○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s, EITI)'는 정부, 석유-가스회사, 광산회사, 산업기관, 국제기구, 투자자, NGO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함.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채굴산업의 지출과 수익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즉, 자원개발 회사들이 지출내역을 공표하고 돈을 받는 정부들이 수입내역을 공개하면 자원개발에 따른 부패를 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기준임.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과 BP, Chevron, Royal Dutch Shell, Total, ExxonMobil 기업들이 EITI를 지지하고 있음.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3월 EITI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 연기금 등 투자기관과 자원개발 관련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임.

7) EITI Newsletter : March 2012 <https://eiti.org/files/newsletter/2012-03/2012-03-newsletter.html>

한국정부와 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EIT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자원개발사업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보안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s)’은 자원개발 사업과정에서 인권침해, 특히 현지국가의 공권력과 기업이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사업을 보호하고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기업과 정부, NGO가 이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영국과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 원칙을 발표하였고 2013년 9월 현재 22개 기업, 8개 국가, 11개 NGO, 3개 읍저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정부와 기업 및 NGO가 채굴산업에 있어 경비보안업체들의 활동에 관하여 스스로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 원칙의 주요내용은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현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권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공권력은 물론 자신들이 고용하는 경비보안업체 직원의 활동에 있어 인권을 존중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어떤 기업 및 NGO도 “보안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3>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훈

○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민간기업들로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0% 이상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기도 함. 이 두 기업들은 각각 국제 자원개발시 일어난 인권침해 이슈로 인해 자원개발 현지 주민들, 해당 정부들, 국제 투자기관들, 국제 NGO들로부터 꾸준히 문제해결을 요구받고 있음.

① 포스코, 인도 오릿사 일관제철소 개발 프로젝트

■ 개요 : 2005년 6월 포스코는 인도 동부 오리사주 주정부와 MOU를 체결해, 30년간 6억톤의 철광석 광산 개발과 연간 1,200만톤 생산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됨. 그러나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인도 국내법 및 규정 준수논란’, ‘지역주민간 폭력사태’, ‘일방적인 토지보상 기준과 공청회 개최’, ‘신뢰없는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여러 논란들과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한국,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NGO들과 함께 포스코 인도 오릿사 프로젝트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2012년 10월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NCP(연락사무소)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2013년 6월 20일 한국 NCP는 1차 평가를 통해 인도 당국이 결정할 사안으로 한국 NCP가 다를 사안이 아니라며 진정을 종결함.

■ 인권침해 현황 : 토지수용 시기에 지역주민들간 폭력사태로 사망자 발생 및 지역주민들과 지방경찰 사이에 폭력사태 발생, 토지수용반대 집회로 해당지역 여성 및 아동들의 다양한 피해, 사회적 약자(어부 등 토지소유 문건이 없는 지역주민 등)를 고려하지 않는 보상계획으로 인한 지역사회적 갈등 등 현지 주민들간의 갈등과 다툼은 대형화, 유혈화, 장기화되고 있음.

■ 국제NGO 요구사항 : 본격적인 개발단계 전 인권영향평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존중 등 포스코는 오릿사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인권침해’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포스코의 대응 :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서 CSR보고서를 발행하거나 UNGC에 가입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과 성과들을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오릿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현지 주민들은 포스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쟁점과 의혹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함. 포스코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도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에 여러 인허가를 승인받았다.’며 법준수를 핑계로 자원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체 및 환경 파괴 및 인권침해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외면함.

②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 개요 : 2000년 10월부터 탐사를 시작한 이후로 2013년 7월 생산이 시작되어 중국으로 가스를 판매해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최근까지 약 15년내내 미얀마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인권침해 의혹 및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토탈과 유노칼이 대형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기 때문에 대우인터내셔널도 조심스런 자세로 가스전 개발사업에 접근해 왔지만, 국제NGO들은 여전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인권침해 현황 : 시추한 가스를 육상에 저장하는 가스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했음. 가스관 공사를 위해 토지를 몰수당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이주 당함.
- 국제NGO 요구사항 : 환경, 보건, 안전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관련정보 공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환경, 보건, 안전 등 관련사항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고충처리절차 확립,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⁸⁾의 수용, 인권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시스템 구축 등
-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응 : 대우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기업윤리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현지에서 학교와 병원을 짓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권침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음.

4. 인권친화적 자원외교를 위해⁸⁾

- 석유가스와 광금속 등 해외지하자원 개발 사업의 특징은 첫째, 자원부국이 대부분 공치(公治)가 취약한 개도국(weak governance zone)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고도의 정치적 위험, 즉, 기업이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독재정권과 손을 잡고 정권적 차원의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의 간접적 인권침해 위험, 둘째,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속성상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수반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인권침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임.
- 분쟁과 갈등 위험이 높고 공치구조가 취약한 자원부국에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험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과 인권책임을 다할 단호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 핵심은 사업 활동과 영향권 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책임을 다하고 나아가서 제3자의 인권침해에도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책임을 다하며 이를 위해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힘쓰는 것임.
- 적극적 자원외교를 한국 정부는 EITI와 VP 등 국제적 요구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자원외교의 약탈적 요소를 약화시켜야 함. 다시 말해 정부차원에서 EITI와 VP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개지지와 민간기업,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의 이행을 권장함으로써, 적극적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이 현지국의 공치개선과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자원부국의 부패한 독재정권과 무분별하게 유착해서 개발이권을 손에 넣는 것보다 인권친화적 자원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친화적 자원외교에 앞장서서 현지 국민의 승인과 존경을 획득하는 편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익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부패한 독재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이 경우 부패와 압제에 터 잡은 특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임.

끝.

8)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인권(1),(2)' 요약, 2009년 5월-6월
http://www.hrcenter.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30&idx=1795&board_md=view
http://www.hrcenter.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30&idx=1813&board_md=view